

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미실시 시 1인당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 정기교육 [붙임2.수강가이드 참고]

FAQ

교육대상

- ✓ **산학협력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및 직원**
- 연구원(산학협력중점교수(연구처), 연구전담교수(연구처), 박사후 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연구행정직원 등)
- 직원(연구행정직원, 한시계약직원, 대학파견직원 등)

교육시간

- ✓ **상반기 교육기간: 2026.5.4.(월)~6.30.(화)**
- 연구원 : 12시간 / 반기
- 직원 : 6시간 / 반기
- ※ 미수료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

교육방법 (온라인 교육) ※모바일 수강 가능

1. 교육생에게 알림발송(교육기관:대한산업안전협회)
2. <https://corp.edukisa.or.kr/> 접속
3. 108-82-05979(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입력)
4. 비밀번호 찾기(안내문자로 제공받은 내용 입력)
5. 강의실-강의실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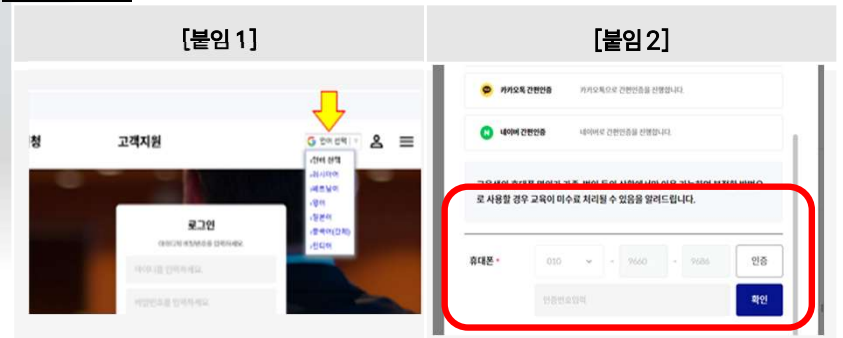
수료기준

- ✓ 과목별 시험응시(3회 재응시 가능, 미수료 시 진도 초기화)
- ✓ 진도율 100%(20%)+목차별 평가(80%)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

기타사항

- ✓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
- ✓ 문의처: 산학협력단 산학EHS팀 (02-820-6840)

1. 연구행정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고 있는데,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
→ 교육은 근로계약상 직종 구분(직원/연구원)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.
산학협력단 연구원은 12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.
ex) 연구원(산학협력중점교수(연구처), 연구전담교수(연구처), 박사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연구행정직원 등)
2. 교육내용이 제가 실제로 하는 업무와 다릅니다
→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실시하며, 근로계약상 직종(직원/연구원)의 주 업무에 맞추어 개설됩니다.
ex) 직원(공통내용 6시간), 연구원(공통내용+연구관련내용 12시간)
3.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가요? [붙임 1]
→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 [언어선택]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언어 동영상 자막이 노출됩니다.
4. 외국인이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? [붙임 2]
→ 본인인증창의 **스크롤을 내리면**,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임의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.



→ 교육 시작 안내 문자를 미수신한 경우 산학EHS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